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최병선, 황서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민병훈, 최기성

변론 종결2020. 5. 27.

판결 선고2020.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면세 수입상품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1,108,050주(지분율 61.56%)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58,200주(지분율 19.9%,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108,050주에서 대상주식을 제외한 것 중 543,600주(지분율 30.2%)를 '잔여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6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운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매수인의 매도청구권 및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인 2013. 5. 3.부터 재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복리)를 적용한 금원을 거래대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매도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보유한다. (후략)

(2)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 계약의 해제 및 실효)

(1) 다음 각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다만,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여하한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이행종결일 이후 본 계약 제4조, 제4조의21), 제4조의32), 제6조3)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8조(비밀유지), 제9조(손해배상), 제11조(계약해제의 효과), 제12조(통지), 제13조(기타)의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중략)

(4) 본 계약이 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통지와 동시에

(i)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ii)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80%에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위 (i) 또는 (ii) 기재 권리의 행사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조 제(4)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6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매대금의 120%에 재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종결일인 2013. 5. 3. 원고는 피고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잔여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2013. 5. 7.자 신청에 따라 대상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다.

라. 대상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

-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2016. 6. 3. 피고에게 "C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6. 3.자로 대상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4.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C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잔여주식 귀속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주식 재매입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잔여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의 시정 요구

-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C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 따라 2016. 12. 19.까지 대상주식을 716억 원(600억 원 + 연 복리 5%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재매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청한다. 피고가 2017. 1. 3.까지 재매입 이행이 없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대상주식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6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2017. 7. 25.까지 대상주식 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별로 귀속시킬 것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 의해서 위약별 이행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2013. 5. 3. 이미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피고가 2016. 12. 16. 내용증명을 통해서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이행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의 시정요구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주식매매계약 제11조 (4)항에 따른 주식 매입 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8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별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상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대상주식 매입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원고에 대한 잔여주식의 귀속을 선택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식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5.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600억 원과 2013. 5. 3.부터 2016. 12. 19.까지 연 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인 거래대금 71,645,886,986원{= 60,000,000,000원 × (1+0.05)⁴}, 이하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 한다)에 10%를 가산한 78,810,475,684원(= 71,645,886,986원 × 1.1, 원 미만 버림)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대상주식 매수대금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2017. 2. 23.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의 주식 매입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를 위반한 경우란 매도인에게 선택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제4조 제(3)항의 위약벌 약정을 위반하여 잔여주식의 귀속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잔여주식 귀속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의 계약위반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4)항 3문에 다시 제4조 제(3)항과 같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에 근거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대상주식 매수대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규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계약해제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확약사항에서 금지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행위들은 "대상회사의 감사, 주식소각, 자기주식 매입, 유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수를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 "제3자를 위한 보증 또는 대여", "대상회사의 회계연도별로 장부가 기준 3억 원(개별 매각 건을 합산)을 초과하는 자산 매각", "회계연도별로 3억 원(개별 매각 건을 합산)을 초과하는 일체의 투자" 등으로서 모두 대상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원고가 매수한 대상주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위반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가치는 변동성이 크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정하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른바 풋옵션(Put Option))과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이른바 콜옵션(Call Option),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의2) 행사에 있어서 주식가치의 등락에 따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매입의무나 매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과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상주식의 가치의 등락에 따른 상대방의 매입의무나

매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의무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의 확약사항에서 정한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불이행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의2에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에 대응하여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제4조와 함께 제4조의2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행종결 후의 예외적인 해제사유로 규정하면서, 제11조 제(4)항에서는 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효과에 대응하여 매도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효과로서 대상주식을 당초 매매대금의 80%에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과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나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계약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의 당연한 효과인 손해배상의 조항이나 위약벌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규정하는 한편 추가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이행 확보기능 이외에 손해배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거부하고 잔여주식의 귀속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문이 규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상주식 매입의무에 대신하여 위약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약벌 약정을 위반하여 잔여주식의 귀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면서 "2017. 7. 25.까지 대상주식 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귀속시킬 것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17.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특히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잔여주식의 원고에 대한 귀속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대상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여 피고에 대하여 대상주식의 매입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매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한다면, 원고는 대상주식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대상주식과 잔여주식만을 보유하게 된다.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주식과 잔여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상주식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단, 이행종결일 이후 본 계약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6. 6. 3.자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2016. 12. 9.자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1. 25.자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의 해석·적용 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 말미의 괄호 부분 또는 제11조 제(4)항 3문의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에 기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 말미 괄호 부분에는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서 계약해제의 효과를 특별히 규정하면서, 그 중 제11조 제(4)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이 아니라 계약해제 후에 의무위반자의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래의 법률관계의 창설에 의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관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 말미 괄호 부분의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적용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 3문은 위약벌 청구 외에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언급 없이 "매도인이 본조 제4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6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매대금의 120%에 재매수하지 않는 경우(단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 역시 3문의 위약벌 발생과는 무관함을 전제로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상대방 당사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 1문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피고는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거래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71,645,886,986원에 10%를 가산한 78,810,475,684원(= 71,645,886,986원 × 1.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2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기한이 경과한 날인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김원목

판사김선범

1) 제4조의2(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매수한 대상주식을 재매입할 권리(이하 "재매입청구권")를 보유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i)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과 (ii) 매수인의 본조 제(2)에 따른 재매입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 종결 이전에 제3자가 매수인이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하여 제안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중 높은 금액을 한다. (중략)

(2) 매도인이 재매입청구권 행사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본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지급받고, 대상주식을 재매도하여야 한다.

2) 제4조의3(대상회사의 IPO)

대상회사가 IPO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상회사의 IPO를 위하여 매도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제한되기 전 6개월 이전에 매수인에게 IPO 추진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IPO를 위하여 매도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제한되기 전 날까지 본 계약 제4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3) 제6조(확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대상회사가 본건 거래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지 않도록 한다. (중략)

가. 대상회사의 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 매입, 유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수를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

나.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를 위한 보증 또는 대여

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상품 매각을 제외하고 대상회사의 회계연도별로 장부가 기준 금 3억 원(개별 매각 건을 합산)을 초과하는 자산 매각

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하고 회계연도별로 금 3억 원(개별 매각 건을 합산)을 초과하는 일체의 투자

마. 기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4) 2013. 5. 3.부터 2016. 12. 19.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환산한 수치이다.